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21. 4. 19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4. 12. 강명숙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: 2021. 4. 12.

다. 상정일자

- 제2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4. 1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강명숙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, 그에 비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일부 조항 개정

-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재위탁·재계약 사무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 마련

2) 부칙 경과규정 추가

- 개정된 항목의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한 사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이를 장려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제안되었음.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제1항 단서조항인 “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 한다.”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개정하여 ”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는 것으로 규정함.
- 이는 기존 보고로만 갈음하게 되어있는 계약적 재위탁· 재계약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여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민간위탁 행정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.
- 또한, 부칙 제1조를 두어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시기를 유예시키고 있음.
- 위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간위탁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 처음으로